

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보도 | 2024.12.19.(목) 석간 | 배포 | 2024.12.18.(수)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연금감독실<br>연금감독팀 | 책임자 | 팀 장 | 이상탁 | (02-3145-5190) |
|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조사역 | 고민정 | (02-3145-5194) |

## [금융꿀팁] <157>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

### 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이번에는 **157번째로**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###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

①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.

② '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,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.

③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

④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.

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.

## 1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'내연금조회'를 통해 가입하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,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✓유의사항

- 통합연금포털 최초 회원가입 시 **3영업일** 후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'내연금조회' 데이터는 **매월 10일에 업데이트** 됩니다.
-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**확정급여형(DB)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, 확정 기여형(DC)일 경우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**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개시예정일은 **만 60세를**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된 연금정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 2 '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,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.

- '24년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,2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**상향\***되었습니다.

\*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(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9호)

-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\*에 대하여 1,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.

\*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,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

□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,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 
저율의 연금소득세(3.3% ~ 5.5%)가 적용되지만,

-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❶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 
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(6.6% ~ 49.5%)하거나, ❷분리과세 (16.5%)  
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,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 
필요가 있으며, 1,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 
분리과세(16.5%)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(참고) 연금소득 원천별 적용 세제

| 소득 원천별 인출 순서 <sup>1)</su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연금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금외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❶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→          | 과세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❷ 이연된 퇴직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→          | 퇴직소득세 <sup>2)</sup><br>(10년 이하: 70%<br>10년 초과: 60%)       | 퇴직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❸ 과세대상 금액(❶+❷)<br><br>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<br>② 연금계좌 운용소득 | 1,500만원 이하 | 저율 분리과세 <sup>3)</sup><br>(3.3% ~ 5.5%)                    | 기타소득세 <sup>4)</sup><br>(16.5%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만원 초과 | 종합과세<br>(6.6% ~ 49.5%)<br>또는<br>분리과세(16.5%) <sup>3)</sup> | 기타소득세 <sup>4)</sup><br>(16.5%) |

1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3 제1항

2) 「소득세법」 제129조 제1항

3)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9호, 제64조의4

4) 「소득세법」 제21조 제1항 제21호

5) 상기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

✓유의사항

-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, **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.**
- **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## 3

##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

-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(확정기간형 연금)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.5%,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.4%, 80세 이상인 경우 3.3%로 낮아집니다.
  - (종신형 연금)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.4%, 80세 이상인 경우 3.3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(참고) 연금수령 연령별 적용 세제(「소득세법」 제129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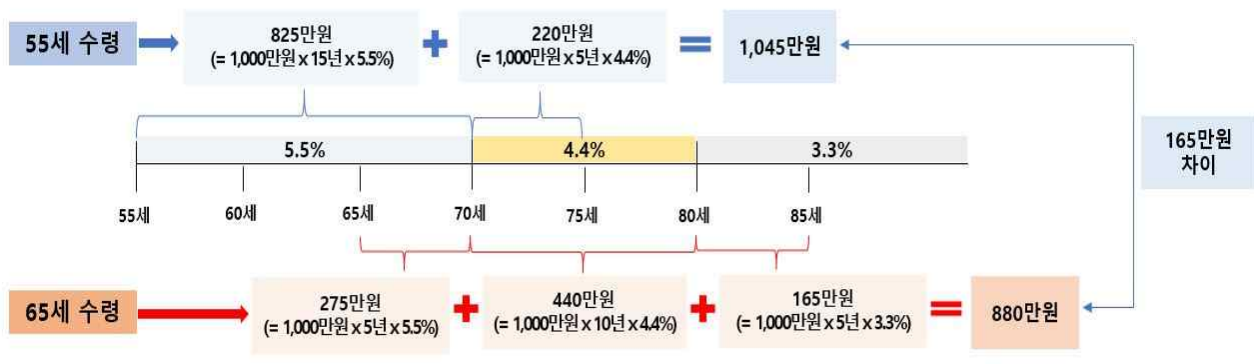
| 구분       | 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 | 연금소득세율*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확정기간형 연금 | 55세 ~ 69세    | 5.5%    |
|          | 70세 ~ 79세    | 4.4%    |
|          | 80세 이상       | 3.3%    |
| 종신형 연금   | 55세 ~ 79세    | 4.4%    |
|          | 80세 이상       | 3.3%    |

\* 상기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

-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·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.

## 사례

☀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 2억원, 20년 확정기간형 연금(年 1,000만원 수령 가정)



## 4

##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.

- 퇴직급여(퇴직금, 퇴직연금)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수령 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.
- (10년 차 이하)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%가 감면됩니다.
  - (11년 차 이상)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 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,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%가 감면되어 약 10%p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.

## (참고) 연간 연금수령한도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)

 소득세법상 “연간 연금수령한도”란 과세기간 개시일\*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적용됩니다.

\*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

##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

$$\text{연간 연금수령한도} = \frac{\text{연금계좌 평가액}}{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} \times 120\%$$

## ✓유의사항

-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연금계좌 가입이 '13.3.1. 이전인 경우 연금수령 연차를 6년부터 기산합니다.
- 「소득세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가 적용됩니다.
-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,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.

## 사례



2012. 1월 A회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홍길동씨가 2024. 1월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

### ■ 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

※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13. 3. 1. 이전이므로 연금수령연차 6년차부터 계산

$$\text{연금개시 시점 연금수령한도} = \frac{2\text{억원}}{11-6} \times 120\% = 4,800\text{만원}$$

☞ 연금수령 개시 연도에 4,8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% 감면

### ✓유의사항

- 상기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, 연금수령 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(☎12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(참고)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적용 세제<sup>1)</sup> 비교



1)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9호 및 제129조 제1항

## 5

##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.

-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나(「소득세법」 §21①)
  -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%~5.5%)가 부과됩니다.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§20조의2)
-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,
  -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(참고)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

| 구 분<br>(소득세법 시행령 §20조의2①)              | 인출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액공제 받은<br>자기부담금 및<br>운용수익 | 세액공제<br>받지 않은<br>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천재지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금소득세<br>(3.3~5.5%)        | 과세제외                |
| 가입자 사망·해외이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<br>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 | ※ 인출한도 : ①+②+③<br>①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<br>② 가입자 본인의 휴직(휴업)<br>월수 X 150만원<br>③ 200만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적재난으로 15일 이상의<br>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개인회생·파산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연금사업자 영업정지·<br>인가취소·파산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## ✓유의사항

-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 목적으로 인출 시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(☎12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IRP계좌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4조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| 세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납입한도                    | - 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(퇴직연금계좌 개인부담액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세제혜택                    | <table><tr><th>총급여액<br/>(종합소득금액)</th><th>세액공제<br/>대상 금액 한도</th><th>세액<br/>공제율</th></tr><tr><td>5,500만원 이하<br/>(4,500만원)</td><td rowspan="2">600만원<br/>(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<br/>최대 900만원)</td><td>16.5%</td></tr><tr><td>5,500만원 초과<br/>(4,500만원)</td><td>13.2%</td></tr></table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급여액<br>(종합소득금액) | 세액공제<br>대상 금액 한도 | 세액<br>공제율 | 5,500만원 이하<br>(4,500만원) | 600만원<br>(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<br>최대 900만원) | 16.5% | 5,500만원 초과<br>(4,500만원) | 13.2%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총급여액<br>(종합소득금액)        | 세액공제<br>대상 금액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액<br>공제율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5,500만원 이하<br>(4,500만원) | 600만원<br>(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<br>최대 90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.5%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5,500만원 초과<br>(4,500만원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2%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연간연금<br>수령한도            | 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}{\text{(11-연금수령연차)}} \times 120\% \quad (1\text{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} 12\%)$ <p>※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임<br/>※ '13.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(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24%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연금수령시<br>과세             | <p>①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<sup>1)</sup>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500만원 이하인 경우</p>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</th><th>연금소득세율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확정형</td><td>55세 ~ 69세</td><td>5.5%</td></tr><tr><td>70세 ~ 79세</td><td>4.4%</td></tr><tr><td>80세 이상</td><td>3.3%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종신형</td><td>55세 ~ 79세</td><td>4.4%</td></tr><tr><td>80세 이상</td><td>3.3%</td></tr></table> <p>②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<sup>1)</sup>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<br/>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(기타소득세 16.5%) 가능</p>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| 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            | 연금소득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정형   | 55세 ~ 69세               | 5.5%  | 70세 ~ 79세 | 4.4% | 80세 이상 | 3.3% | 종신형 | 55세 ~ 79세 | 4.4% | 80세 이상 | 3.3%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금소득세율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확정형                     | 55세 ~ 6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5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70세 ~ 7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4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80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종신형                     | 55세 ~ 7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4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80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연금외<br>수령시 과세           | -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부득이한<br>인출요건            | - ① 천재지변,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사회적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/개인회생 ⑥ 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br>- 과세 : 연금수령시 과세와 동일(3.3~5.5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
- 1)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: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
 2) 도표상 세율 : 지방소득세(주민세) 포함



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 **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